

【2023년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】 2차 사업 공고

「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2023년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. 05.

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

I.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 :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유도
- 사업기간 : **사업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**
- 사업내용 :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안산시 관내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
- 지원규모 : **선정과제당 4,100만원 이내**
 - 기업부담금 : 총 사업비의 20% 이상(현금 20% 이상)
 - 사업비 부담 예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안산시 지원금	기업부담금	총 사업비
사업비	41,000	10,250	51,250
비 율	80%	20%	100%

- 지원분야 : 공정개선 시스템 제품의 현저한 성능개선 융합기술 개발과제 등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로 전략 지원분야 및 일반 지원분야로 구분 지원(별도 경쟁)

구분	세부 분야	모집규모
전략과제	로봇 및 미래차 관련 산업	4개사

※ 사후관리 : 과제 수행 완료 후 3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하여야 함

II. 신청자격 및 요건

가. 신청자격 :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

-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인 기업
 - ※ 사업 수행 중 안산 관외로 이전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
- 사업화가 가능한 융합제품 개발(로봇 및 미래차 분야), 공정개선 시스템, 현저한 제품기능·성능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·벤처기업
 - ※ 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,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는 예외

나. 신청자격 제한(1개이상 해당시)

-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
- 신청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안산시 또는 경기 테크노파크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
-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 - 단,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
-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
- 신청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단,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거나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
-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%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% 이하인 경우 (폐업대비/신생기업)
- 민원야기, 임금체불, 환경오염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

Ⅲ. 신청 및 평가

가. 신청 및 접수기간

- 온라인 접수(필수) :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(<http://pms.gtp.or.kr>)
- 공고 및 접수기간 : **2023.05.03.(수) ~ 2023.05.17.(수) 18:00까지**

나. 제출서류(온라인 업로드)

-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(날인 본, 2023년 양식)
- 사업자등록증 1부.
- 최근 2개년(2021,2022년)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서 1부(관할세무서장 확인)
- 2022년도 결산이 서류접수 이후일 경우 현장평가지 제출
- 국세·지방세 납입 증명서 1부.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.
- 가점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1부 (해당기업)
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유사과제 검색결과 사본 1부
※ 검색년도 : 2004년 ~ 현재, 유사도 : 60% 기준

다. 선정 방법 및 기준

- 선정방법 : 관리기관(경기TP)의 사전조사(요건 충족 여부, 중복성, 신용 불량 여부 검토 등) 후 신청기업의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 실시
※ 발표장소 : 경기TP(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)
- 선정기준 : 사업계획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, 기술성 및 추진능력, 사업성 및 시장성, 기업 재정의 안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분과별 상대평가 실시
- 가 산 점 : 장애인기업 5점, 여성기업 5점(최대 10점) 부여

IV. 지원절차 등

가. 지원절차 및 일정

구 분	제출서류	제출방법	지원내용	일정(안)
사업공고 및 접수	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	경기TP 홈페이지(PMS)	동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관련 정보 안내	5/3 ~ 5/17
↓				
발표평가	발표자료(PPT)	이메일	사업계획서 및 발표평가 통한 검토 및 선정평가	5월중
↓				
과제선정 및 협약	협약관련 서류 일체	방문	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후 협약 체결	5월중
↓				
사업비 지급			최종 선정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6월초

※ 상기 일정은 동 재단 내부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

나. 문의 및 접수처

- 담당자 : (재)경기테크노파크 클러스터혁신성장팀 이병준 주임
- 연락처 : (Tel)031-500-3099 / (Fax)031-500-3371
- 접수처 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05 지원편의동 325호(우편번호 : 15588)

다. 주의사항

- 사업계획서 작성 시 2023년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요망

V. 기타 사항

가. 선정기업 통보 : 개별 통보

나. 안산시 지원금 교부 : 협약체결이 완료된 선정기업에 직접 지급

- 단, 안산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필요(기업자부담)
- 최종 협약시 서류 대표자 반드시 내방

다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선정 후 본 사업의 수행과정과 회계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청 시 이에 성실이 응하여야 함

끝.